

공간조정위원회규정

제 정 1995. 3.
개 정 2001. 4.
개 정 2007. 9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육공간 조정 및 배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임무) 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

③총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.

제3조 (임기)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중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시설 배치 계획안 연구에 관한 사항
2. 교육시설 종합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교육시설의 부문별 배치 및 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공간조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(의안발의) ①총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발의한다.

②위원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총장은 보고된 의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제6조 (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내부결재로 기안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.

제7조 (연구위원) 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 (구성원 참여) 위원회에는 공간조정과 관련되는 교수 및 학생 관계자를 참여토록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 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제10조 (기타)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